

의안번호	2216556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6.3.3.
추계번호	26B0753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4(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공개 등) 신설	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(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1.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2.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 사유 및 처리 현황 3.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5조의4(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의 수립 및 공개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등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연 1회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법 제14조의4제1항¹⁾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

1) 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

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
○ 한편,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11조²⁾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「순환경제기본계획」의 시행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·시행하고 있음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용역을 통해 「순환경제기본계획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
- 일례로, 전라남도는 2022년에 ‘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’을 수행하였으며, 해당 용역에 1억 100만원이 소요됨

○ 개정안이 시행되어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할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 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 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)
- 2) 제11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, 제출 및 승인·변경승인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다만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립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, 각 지방자치단체별 수립 방식 또한 특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